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압류 통지

1. 귀하(귀사)가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확정된 후에는 의무상환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(근거: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2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제3항).

납 부 자	성 명 (상 호)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		
압 류 재 산 의 표 시				
압 류 일 자		년 월 일		
압 류 조 서 작 성 일 자		년 월 일		
압 류 사 유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(금액 단위: 원)				
소득구분코드	관리번호	연도/월	의무상환액(①)	
소득구분	납부기한	계(①+②)	연체금(②)	

2. 다만,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일자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의무상환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.
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